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55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장치”를 “안전장치 및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
5. 자동차의 운행 상황과 운전자의 페달 조작 상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

부 칙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의18(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의 종류)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u>안전장치</u> 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의18(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의 종류) ----- ----- <u>안전장치</u> 및 <u>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u> -----.
1. ~ 3. (생 략)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자동차의 운행 상황을 실시</u> <u>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u>
<u><신 설></u>	5. <u>자동차의 운행 상황과 운전</u> <u>자의 페달 조작 상황을 함께</u> <u>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u> <u>영상을 기록하는 장치</u>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4761